

전력산업기반기금의 胎動과 運用(상)

신 서 철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 서기관

1. 설치배경

가. 구조개편과 공익기능 수행 주체의 변화

21세기 들어 우리 나라 전력산업은 시장경제체제 도입 등으로 인해 혁신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그 동안 한국전력공사에 의해 독점 공기업체제로 운영돼 오던 우리 나라 전력산업은 발전용량 5000만kW까지 증가하여 세계 12위 규모로 성장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단일기업이 국가 전력산업을 이끌어 가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정보기술(IT)의 발달과 소용량 발전기술의 개발로 이제는 전력도 하나의 상품처럼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해졌으며, 민간 자본에 의한 발전소 건설도 용이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적·기술적 여건변화와 세계적인 전력산업개편 추세에 따라 우리 전력산업에도 「경쟁에 의한 효율성 향상」이라는 목적 하에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은 독점체제인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여 전력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지속적인 보장과 전력사용에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통한 편익증진을 위해 발전부문을 몇 개의 발전회사로 분할하여 경쟁을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배전부문까지 몇 개의 배전회사로 나누어 전력도·소매 부문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력산업의 민영화에 따른 경영합리화와 시장

원리에 따른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 등의 기대효과와는 달리 지금까지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수행해 왔던 여러 가지 준정부적·공익적 기능 등에 대한 수행 문제가 대두되었다.

자본주의 시장원칙에 따를 경우 수익에 우선순위를 둔 전력회사들은 투자위험이 큰 신규발전소 건설이나 공통적 전력기술개발, 농어촌 벽지나 도서지역에 대한 전력공급사업 등 비수익성 사업들에 대해서는 등한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전력산업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가 전체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며 불균형적인 사회구조 형성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에도 전력분야 공익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전력분야 공익기능의 상실을 방지하고 나아가서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정부가 직접 공익사업을 수행키로 한 것이다.

나. 기금의 설치 및 사용

이에 정부는 전기사업법을 개정(법률 제6283호, 2000. 12.23)하여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행기에 상실될 우려가 있는 공익사업들을 직접 추진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신설하였다.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예산회계법 제7조에 특정한 재원으로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출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기금이 국민의 조세 외에 별도의 부담을 요구하는 준조세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조세 법정주의의 원칙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고, 기금관리기본법 개정(2001. 12.31)에 의거 일반예산과 동일하게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와 재정통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금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금은 법률에 의거 설치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원을 조성하고 운용해야 하며, 기금의 설치목적에 구현하기 위한 중·장기적 비전과 운용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관된 공익사업들에 대하여 기금의 사용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구조개편 이후에도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한 중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포함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동 계획에 근거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재원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징수에 관한 법적 근거는 전기사업법 제51조에 규정하여 전기요금의 1,000분의 65 범위 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동법 제47조에는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주체, 수립목적, 수립내용 및 수립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금의 특성상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동법 제48조 및 제49조에는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먼저 기금의 설치목적은 구조개편 이후에도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며, 또한 기금은 전력수요관리사업, 전원개발촉진사업, 도서·벽지의 주민에 대한 전력공급지원사업,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국내 무연탄, LNG, 집단에너지, 대체에너지발전지원사업, 전기안전의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일반용 전기설비 점검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전력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력분야 시험평가검사시설 구축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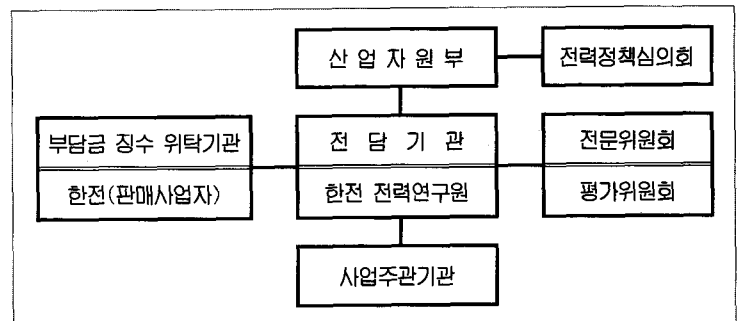
2. 추진현황

가. 기금의 제도적 절차 마련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른 전기사업법의 개정으로 그 동안 한전이 수행하던 공익사업을 정부가 이관받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으로 시행하게 됨으로써 제도적 절차를 통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 및 절차를 정비하였다.

우선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기획·관리·평가업무 및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관을 과거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경험과 관련 공익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인력으로 구성된 한전 전력연구원을 지정하였으며,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용규정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요령을 제정(산업자원부 고시 2001- 107,108호)하여 사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국민들의 부담으로 조성된 기금에 대하여 목적성을 갖고 합리적인 사용을 도모하고, 정부 정책추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활발한 의사결정 참여를 위해 정부, 시민단체 및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전력정책심의회를 설치하여 사업과 관련



〈그림 1〉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추진체계

된 중요 정책 결정시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 추진시 관련 전문가 및 기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성과 측정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및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별 특성과 목적에 부합하며,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법인, 기관, 단체 등을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기금 부담률은 전기요금의 1000분의 65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에는 현재 1000분의 45.91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초 부담률 1000분의 65 범위 산정 당시 포함되어 있었던 요금교차 보조사업인 농사용 등 원가 이하 요금보조사업, 요금특례 지원사업, 제주지역 결손지원사업 등은 업무 효율성을 위해 한전이 계속 수행하도록 함에 따른 것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신설(2001년 4월)시부터 전기사용자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기요금 청구서에 전력기금을 명시하였으며, 2002년 6월 1일부터는 전기기본공급약관을 개정하여 전기요금에서 기금을 완전 분리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부담률의 인하요인 발생에 따른 혜택이 한전이 아닌 전기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나. 2001년 및 2002년 사업시행 및 추진실적

개정된 전기사업법이 2001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1년 및 2002년 사업 시행계획을 동시에 추진하게 되었다. 2001년 사업에 한하여 한전이 기존 편성한 범위 내에서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에 중점을 두고 전력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수립(2001. 7. 13)하였다.

기존 한전이 수행해 왔던 공익사업들을 전력수요관리 사업, 전력연구개발사업, 전력공익사업 및 타에너지지원

사업 등 4대 사업으로 재편성하여 2001년 6월부터 정부가 직접 수행하였다.

2001년 기반조성사업 기금편성 기본방향은 사업시행의 과도기적 상황임을 감안, 한전이 추진하였던 공익사업 범위 내에서 추진하되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구조 개편 초기단계에서의 이해관계인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립하였다.

전력수요관리사업 및 연구개발사업은 한전 예산에 반영된 수준으로 지원하되 전력수급안정대책으로 50만kW의 피크 억제를 목표로 사업비를 다소 확대하였으며, 공익사업 및 타에너지 지원사업은 농어촌전화촉진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하였고, 개정된 전기사업법에 의해 기금지원근거가 마련된 전기안전관리, 인력양성사업 등을 기금에서 지원하였다.

2002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및 기금운용 계획이 전력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2002년 8월 14일 수립되었다. 2002년 기반조성사업 기금편성 기본방향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첫해로서 기존 공익사업들에 대하여 Zero 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통한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도록 하였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지원의 기본원칙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선에서 최소한 지원하고 특정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점진적으로 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전력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력수요관리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전력공급능력 확충을 위해 민간의 신규 발전소 건설을 유인하기 위한 전원개발지원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증액하였다. 그리고 시장경쟁체제하에서도 전기의 안정적 사용과 전기사용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생활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기안전관리지원사업 및 보편적 전력공급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표 1〉 전력수요관리사업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	사업목적	2001 사업내역		2002 사업내역
		계획	실적	계획
전력부하관리사업	전력부하 평준화, 전원설비의 효율성 제고	3,008	18,858	31,862
전력효율향상사업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자원절감	16,520	13,522	26,071
전력수요관리홍보사업	수요관리사업 및 전기절약 대국민 홍보	1,530	1,343	3,919
전력부하관리요금지원사업	최대수요전력 억제로 전력수급안정 도모	28,515	27,599	34,289
합 계		76,573	61,322	96,141

(1) 전력수요관리사업

전력수요관리사업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하절기 최대전력수요 억제 및 전기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전력부하관리사업, 전력효율향상사업, 전력수요관리홍보, 전력부하관리요금지원사업 등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력부하관리사업은 축냉기기, 원격제어 에어컨, 직접 부하제어기기 등 부하관리기기를 설치하는 수용가에 대하여 설치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전력효율 향상사업은 고효율조명기기, 고효율자판기, 고효율인버터 등 전력효율 향상 기기를 설치하는 고객에게 설치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요관리 홍보 및 평가사업은 수요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정보 제공으로 국민들의 자율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수요관리기기 소비행태 등 조사분석과 수요관리평가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인 평가 및 제도개선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며, 부하관리요금지원사업은 최대전력수요가 발생하는 시기에 집단휴가 또는 자율절전 등에 참여하는 고객에게 약정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01년도 전력수요관리사업 사업비는 당초 766억원이었으나, 축열기기 지원제도 폐지와 국내 음료자판기 시장 침체로 인한 고효율자판기 지원실적이 저조하여 집행실적은 613억원으로 계획대비 80.1%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나 사업성과 측면에서는 직접부하제어제도를 도입하여 2005년 비상시 전력운영능력 150만kW 달성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부하관리사업으로 인한 전력수요 대체량이

209만 1000kW, 전력효율 향상 사업으로 인한 전력수요 대체량이 8만 5000kW로 총 2176kW를 전력수요 감축 효과를 가져와 2001년 기준 원자력발전소 2기의 발전소 건설을 억제하였다. 이는 투자효과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619억원을 투자하여 2조원에 해당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발전소 및 전원설비 건설대체에 따른 환경비용을 고려하면 그 기대효과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2) 전력산업연구 개발사업

'98년 이후 IMF 및 한전 분할 과정에서 투자가 지속적으로 위축되었으며, 최근 시장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경쟁체제 조기정착과 전력산업의 수출산업화 등 기술수요의 지속적인 증대에도 불구하고 투자 부진은 더욱 심화되어 그 동안 축적된 기술기반이 상실될 우려가 대두되었다. 이에 과거 한전이 준정부적 위치에서 수행해 온 전력산업 분야 연구개발사업을 이관받아 정부 주도의 사업추진으로 전력산업 기술개발의 정상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가 전력산업 추진방향과 체계를 정비하였다.

2001년도 연구개발사업의 중점추진방향은 한전의 연구개발사업 중 법령 및 정부의 권고에 의해 추진해 온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 등 G7사업, 에너지절약기술, 대체에너지기술, 원전기술고도화사업 및 기술기준개발사업을 우선 이관받아 기술개발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보장하였으며, 정부 차원의 증장기연구개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술개발 영역 및 분류체계를 개발하여 재구성하였으며 한전 등 민간 전력회사의 연구개발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Matching Fund 제도를 마련하였다.

전력산업

〈표 2〉 전력연구개발사업 현황

○ 2001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주요 사업	사업 목적	2001 사업내역	
		계획	실적
전략적선도	신전원기술 등 핵심전력기술 개발	12,893	12,773
공공전력기술	전기안전조사연구 등 공익적 기술 개발	7,951	7,527
전력공통기술요소기술	공통기반기술 및 범용성기술 개발	2,395	2,306
전력인프라조성사업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사업 등	5,623	5,371
합 계		28,862	27,977

○ 2002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 사업	사업 목적	계획	비고
전력계통/이용기술	전력계통의 신뢰성향상 기술 개발	11,123	
전력기초/환경/품질기술	전기관련 생활환경 개선에 직결되는 공익분야 개발	12,400	
공통기반기술개발	전력산업체가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반기술	5,623	
합 계		78,700	전력산업 인프라 조성
인력양성지원사업	산업인력, 기초인력, 전문인력 등	9,800	
기술기반조성사업	정책연구, 기술기준, 정보화 국제협력 등	11,396	
기반조성홍보사업	기반조성사업 및 구조개편 대국민 홍보	2,000	
합 계		23,196	

〈표 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세부내역

세부사업명	2002년 계획	산출근거 및 사업내역	
		산출근거	사업내역
기본지원사업	33,570	• 발전원, 시설용량, 건설·가동 및 소재지 감안 결정 • 원자력, 화력, 건설중인 수력: 34개 발전소 • 가동중인 수력: 12개 발전소	
특별지원	114,262	• 건설 및 건설 예정중인 7개 발전소 • 건설비의 1.5%(자율유치 경우 2.0%) 이내	
홍보사업	13,076	• 46개 발전소 주변지역 홍보 (기본지원사업비+기업유치지원사업비)의 5% • 원자력문화재단 대국민 홍보	
전기요금보조	3,276	• 4개 원전 주변지역 • 시설용량에 따라 기준금액 결정(산자부 고시) • 5km 이내 지역: 100%, 5km 초과 지역: 50% 지원	
주민복지지원	150	• 시설용량에 따라 건설 준비기간부터 5년간 용차지원	
기업유치지원	3,240	• 읍, 면, 소재 100만kW 이상 12개 발전소(용차) • 기본 지원사업비의 10% 이내	
민간환경 감시기구	1,126	• 4개 원전 환경감시기구 • 원전 분무별 연간 운영비 3.5억원 이내	
부대사업	405	• 46개 발전소, 7개 전력회사 본사 • 위원회 운영비, 위원 여비수당, 인쇄비, 업무여비 등	
합 계	199,105		

2002년도는 전년도 사업시행 결과를 반영하여 세부사업간 목적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사업체계를 신전원

시장경쟁체제에 부합하는 추진체계 및 절차 마련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전원입지 확보 등의 공적인 부문과 민간

기술개발사업, 전력계통/이용기술개발사업, 전력기초/환경/품질기술개발사업, 공통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재편하였으며, 정부로 이관되는 과도기적 여건에서 통합·운영되어 온 인력양성, 기술기준 개발 등 인프라조성사업을 연구개발사업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도록 하였다.

(3) 전력공익사업

전력공익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전기사업법 제6조, 제14조, 제49조 및 농어촌전화촉진법 제20조2항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는 도서·벽지 전력공급지원사업, 전기사업법 제49조 및 제66조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지원사업 및 전원개발지원사업 등 주로 법령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켜 전원개발 촉진과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으로 전력수급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2002년 1월부터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으로 정부가 수행하게 되었다.

정부로 이관된 2002년 사업의 주요내용은 표 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세부내역과 같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그 동안 급격한 전력수요에 대응하여 전원설비 입지 확보 및 건설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구조개편에 따라

〈표 4〉 도서, 벽지 전력공급지원사업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주요 사업	사업 목적	2001 사업내역		2002 사업내역
		계획	실적	계획
한전 인수 운영 도서 결손지원	한전 인수 운영에 따른 전력공급 신뢰도 향상	12,061	12,061	53,800
도서 벽지 전력공급	설비 개체 및 지자체 운영결손액 지원으로 도서, 벽지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15,952	15,952	23,279
합 계		28,553	28,553	77,079

발전사업자가 발전소 건설·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적인 부문 간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을 위해 정부는 「경쟁체제에 대비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나) 도서·벽지 전력공급지원사업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거나 불안전하게 공급되는 도서·벽지지역에 대한 전 화사업을 촉진하고, 자가발전시설을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도서지역에 대한 전력공급사업을 원활히 수행하여 전기사용에 대한 국민의 기본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서 발전설비 중 한전이 인수·운영하고 있는 울릉도, 대청도 등 총 55개 도서의 전력공급에 대한 운영결손을 지원하고 있으며, 10호 이상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시설개체 및 계통연계가 가능한 5호 이상 도서, 벽지지역의 전 화사업과 500호 미만 50호 이상의 도서지역 중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자가발전시설 운영비를 지원하여 전기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도서,

벽지 주민에게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전기안전관리지원 사업은 전기화재 및 감전사고 방지 등 전기사용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

업으로 취약 전기설비 예방점검 및 각종 안전점검 활동으로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기시설안전관리지원사업, 전기안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하여 안전한 전기사용 및 전기안전 문화의 정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전기안전관리 홍보사업과 전압 600V 이하, 용량 75kW 미만의 일반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결과 명절 등 사고빈도가 높은 취약시기와 월드컵, 대입수능 등 각종 국가행사를 안전하게 치르는데 기여하였고, 주기적인 전기점검이 소홀할 수 있는 소규모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도를 향상하였으며, 전기개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에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4) 타에너지지원사업

타에너지지원사업은 국가의 전체적인 에너지 수급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 무연탄발전, LNG발전, 열병합발전 및 대체에너지발전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발전사업자에게 보전하는 형태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손실에 대한 가격을 보전하는 형식으로 지원됨으

〈표 5〉 전기안전관리지원사업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주요 사업	사업 목적	2001 사업내역		2002 사업내역
		계획	실적	계획
전기시설 안전관리사업	취약 전기설비 예방점검 및 중대사고 조사	2,000	1,942	3,247
전기안전관리 홍보사업	전기안전에 대한 홍보를 통한 전기안전문화 정착	1,404	1,392	2,500
일반용전기설비 안전점검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 또는 사용중 전기사업법상 기술기준의 적합성 여부 점검	19,756	19,949	50,581
합 계		23,160	23,283	56,328

로 인해 공정한 시장조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 있으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수급균형과 전력산업과 연관성이 있는 타 산업분야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지원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구조개편 이후의 타에너지지원사업의 추진방향은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유지하되, 지원금 산정방식의 현실화 등을 통해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가) 국내 무연탄발전지원사업은 발전원가가 비싼 국내 무연탄 사용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국내 석탄산업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영동, 서천, 동해, 군산화력발전소에서 석탄산업장기계획에 따라 국내 무연탄 생산량의 68.7%에 해당하는 285만톤을 2001년 및 2002년에 발전용으로 소비하였으며 그에 따른 발전손실에 대하여 2001년에 783억원, 2002년 1,586억원을 지원하여 탄광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생존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국내 석탄산업의 연착륙에 일조하였다.

(나) LNG 발전지원사업은 LNG 수급 장기계약에 의해 도입되는 고정물량에 대하여 도시가스 등 민수용으로 소비되는 물량의 잉여량을 발전용으로 사용함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하여 국내 LNG 수급불균형 해소 및 에너지수급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1년의 경우 민수 시장의 활성화로 공급초과물량이 발생하지 않아 지원실적이 없으며, 2002년에도 공급

초과 물량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비를 미 반영하였다.

(다) 열병합발전지원사업은 지역난방 열공급을 위해 강제 가동되는 발전사업자의 발전손실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에너지이용효율 극대화 및 환경개선 효과를 향상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열병합발전지원사업은 열공급에 따른 손실분을 열수용가가 부담하지 않고 전체 전기수용가(기금)가 부담함으로써 수익자부담원칙 및 형평성에 위배되는 점은 있으나, 수도권 전력공급에 따른 송전손실 감소, 수도권지역의 환경개선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급격한 열요금 인상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열요금을 현실화하여 기금지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시장경쟁체제의 조기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옳바르다고 할 수 있다.

(라) 대체에너지발전지원사업은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공급한 전력의 우선구매로 인한 전기판매사업자 및 발전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하여 대체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환경개선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국내에는 풍력, 소수력, 매립가스를 이용한 대체에너지 발전을 하고 있으며 대상 발전소로는 PPA 계약에 의한 행원풍력발전소 등 23개 발전소, 시장참여자인 김포매립지 발전소 등 11개 발전소로 총 발전량은 2억 7444만 1천 kWh로서 2001년 지원실적은 9억원이며 2002년 지원실적은 56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대체에너지발전사업을 장려, 육성하기 위해 「대체에너지발전 전력기준 가격 지침」을 고시, 지원기준을 달리하여 신규 시장참여자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표 6〉 타에너지지원사업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주요 사업	사업 목적	2001 사업내역		1002 사업내역
		계획	실적	계획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국내 석탄산업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116,492	78,295	158,637
LNG 발전지원사업	LNG 수급불균형 해소	12,798	-	-
열병합발전지원사업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및 환경개선	70,560	65,968	115,839
대체에너지발전지원사업	대체에너지산업 육성 및 환경개선	1,458	855	5,557
	합 계	201,308	145,118	280,033